



#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안에 숨겨진

심각한 윤리적 문제



김연준 신부

(천주교 광주대교구 지리산 피아골피정집 관장)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도 찬성하십니까? 침묵은 더 위험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29일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안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찬성하신 분은 법안 내용을 정확히 알고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신 분은 어떤 이유로 반대하십니까?

이 법안은 신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엄청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과 이 법안의 폐해와 심각성을 공유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무산을 위해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인간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29항

실제로 이 법안에 동조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위의 「사목헌장」 29항을 떠올리며 차별금지법(안)을 마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목헌장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모든 근원을 거스르면서 “인간의 중요한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조화를 위배하는(2019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38항)” 법안이기에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에는 장애인,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들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

의된 법안은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별의 정의를 남성, 여성만이 아닌 제3의 성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취향)과 성적 정체성 등 모든 면을 인권법 안에 넣음으로써 무분별하고 비윤리적인 내용까지도 무차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세상의 근원이 되는 가정의 붕괴와 성 윤리의 파탄을 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입니다. 즉, 개인의 성적 취향(지향)과 성적 정체성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행위이든,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별의 개념도 남성과 여성이 아닌 양성, 중성, 동성, 무성 등을 포함하여 수십 개의 성의 존재를 규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존에 변태적이라고 생각했던 '성적 문란'이 '인권'으로 탈바꿈되고 맙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성적 교감을 나누는 폴리아모르를 비판한다면 차별금지법에 의해 제재의 대상이 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성서의 가르침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설마라고요? 제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안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면서 제목만 보고 찬성합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 억 원을 호가하는 집을 어떻게 계약서 문구도 읽어보지 않고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악마는 디테일함에 있습니다.

---

## 차별금지법(안)의 핵심 쟁점

---

다음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그 외의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무엇일까요?

- 성별의 정의: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차별금지법(안) 2조 1항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창세 1,27).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60여 종류가 넘는 젠더로 창조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숭고한 성의 개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성도 인간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잠깐, ‘젠더(gender)’의 개념을 알아보시다.

젠더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gender)’을 뜻합니다. 젠더 이론을 따르게 되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내가 인지하는 성을 내 성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자신을 여자인 것 같다고 여기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자신을 남자인 것 같다고 여기면 남자인 것이며, 자신을 중성인 것 같다고 여기면 중성인 것입니다.<sup>1)</sup>

---

1) 이 이론이 확장되면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일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젠더이론에서는 바이젠더, 인터젠더, 젠더플루이드, 팬젠더 등 아주 다양한 성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6년 미국의 뉴욕시는 성을 31개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번 국회에 발의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그 외의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성별의 정의로 규정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의 많은 법학자들도 “차별금지법(안)은 무려 23가지를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파격적인 평등법안”이라 하면서 ‘평등’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나 종교적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sup>2)</sup> 이 차별금지법(안) 2조 1항은 다자성애자, 법성애자는 기본이고, 사물성애자까지 인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문 『사랑의 기쁨』을 인용한 것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한다. 그리고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차원의 인간 정체성과 정서적 친밀을 조장하는 교육 계획과 입법을 야기한다. 그 결과로 인간의 정체성은 개인의 선택이 되고, 또한 시간이 흐르면 바꿀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sup>3)</sup>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2항

2) 김주영, 한국일보 칼럼(2020.7.29.),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극동방송 인터뷰(2020.7.23.) 등  
3) 프란치스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2016.3.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제1판), 56항.

다음으로 차별금지법(안) 2조 4항을 살펴봅시다.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위 문구에서 ‘성적지향’은 ‘성적취향’과 유사한 뜻인데, 이성애를 넘어서 동성애와 양성애 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선언되는 심각성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리의 기준은 ‘개인’이 되는 것이며 정통적인 기준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2조 5항의 성별 정체성과 결부하여, 합법적 동성결혼과 연결되고 동성결혼자들의 입양도 법적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현재 초등, 중등, 고등,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존의 남녀 간 성교육 외에도 동성애 등 다양한 젠더에 대해서도 다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교사가 동성 간 성이나 어떤 특정한 성적 대상이나 방법을 비난하거나 단죄한다면 인권법에 걸리게 되고 벌금형을 포함하여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다음은 차별금지법(안) 2조 5항의 내용입니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해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젠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로 남성인 사람이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더라도 막을 수가 없고 불쾌함이나 거부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여자로 인지하므로 여자인 것입니다.<sup>4)</sup>

. 따라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그 사람을 막고 나무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남자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조 5항에 따르면 ‘다자 연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다자 연애라는 것은 여러 사람과 동시에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장들을 경청하면서 우리는,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문헌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 선언하고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21. 실제로 다양한 정체성들을 옹호하는 주장은 흔히 여러 다른 정체성들을 서로 완전히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각 정체성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성적 차이의 문제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띠게 된다. 사실, ‘무차별’이라는 포괄적 개념에는 흔히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다름과 자연적인 상호성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그러한 제안은, 인간 존엄에 필요한 다름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축소시켜 버리는 성별 차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타파하기는커녕, 성별 차이를 개인의 발전과 인간관계와 무관한 것

---

4) 그 사람이 저녁에 다시 자신을 남자로 인지하면 남자이다. 이것을 ‘젠더플루이드’라고 한다. 만약, 자신을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으로 생각한다면 ‘데미젠더’에 해당하고,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인터젠더’라 부른다. 그밖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사회적 성, 성적 지향을 확립하지 못하고 질문을 계속하는 ‘퀘스처너(Questioner)’라는 유형이 있다.

으로 만드는 절차와 관행을 제안함으로써, 단순히 성별 차이를 없애려는 것이다. 그러나 ‘중성’에 대한 환상은 성별이 구분된 인간의 존엄성도, 새 생명 출산에 대한 개인의 본성도 모두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는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만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통과된 해외 국가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 2000년 미국의 에버린 보데트(Evelyn Bodett)는 레즈비언인 부하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파면되었고, 미국 연방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2002년에 동성애자들은 미국 미시간 퍼데일(Ferndale) 시의회에 압력을 가하여 경찰서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침례교 목사의 면직을 요구했다. 동성애자들은 그 목사가 동성애는 최악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영적 폭행을 저지른 자라고 주장하였다. 시의회는 해임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반동성애 의견은 정죄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 캐나다 토론토는 초등학교 7학년 때는 이성 간 성행위 및 항문 성행위를 가르친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는 ‘게이와 레즈비언 금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정상이라고 교육한다.
- 2006년에 캐나다의 한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라는 발언을 해서 벌금 1,000 달러와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2008년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한 교사는 대중매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7,000불의 벌금형을 받았다.
- 영국에서는 목사가 길에서 설교하던 중, 동성애자의 질문에 동성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최악이라고 대답을 하여 구금되었다.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 들어갔다.



- 대만 교육부는 2011학년도부터 초중등학교 9년 교과 과정에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성평등 교육의 일부로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화민국’의 연구에 따르면, 타이완인 동성애자의 20%가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고발 사건이 있었다. 2013년 한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식을 앞두고 케이크를 주문하기 위해 빵집에 갔다. 이 빵집을 운영하던 클라인 부부는 동성커플에 대한 축하케이크를 만드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문을 거절했다. 그러자 이 커플은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고발했고 빵가게 주인은 한화로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6년간의 긴 소송이 이어졌고 미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동성애자 권리보다 우위”라며 최종심을 마쳤고 클라인 부부는 승소했다. 이와 유사하게, 게이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콜로라도 주 마스터스 피자점 주인 잭 필립스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한 사건도 있었다.
- 2016년 뉴욕시는 이 세상에는 31개의 성(性)이 있다고 공포했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그(he)나 ‘그녀(she)’ 대신에 중립적인 성을 의미하는 ‘se’나 ‘hir’를 쓰도록 권장했다. (Lifesite News, 2016)
-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성전환을 반대하면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자녀가 성 정체성을 밝히거나 성적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교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일종의 학대로 보고 주정부가 이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한 것이다.
-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였고 그 결과 입양은 물론 남동생의 정자를 이용한 레즈비언 커플의 인공수정과 출산, 게이 커플의 대리모 이용 자녀 출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몇 가지 해외 사례들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청소년들은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퀘스처너리 등의 성

소수자 청소년은 일반 인구보다 자살 시도율과 자살성 사고의 빈도가 높습니다. 임상 사회복지사 케이틀린 라이언의 가족 수용 프로젝트(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가족들에게 심한 배제를 경험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부모 혹은 부양자에게 배제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혹은 낮은 수준의 배제를 경험한 청소년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확률은 8배,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앓고 있을 확률은 6배, 불법 약물을 사용할 확률은 3배, HIV나 다른 성병에 감염될 위험은 3배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 청소년은 이성애자 청소년보다 자살 시도율이 더 높은데, 자살 방지 자원 센터 The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30~40%가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니 그 심각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어떤 동성애 커플이 서로 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길 가던 가족의 자녀가 부모에게 “저 사람들, 왜 저래?”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의 부모가 “저건 옳지 않아.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말해서 그 커플이 그 부모를 고소한다면 부모는 벌금을 물고 성차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정교육은 물론이고, 학교 교육에서도 동성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불러 상담을 하거나 설득하고 교정하는 일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이 더욱 급증하게 될 것이며, 언론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법에 의해 동성애가 보호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일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가톨릭교회가 성 소수자들을 도와주려는 것과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357항은 동성애를 이렇게 정의하고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동성의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거나 더 강하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자끼리나 여자끼리 갖는 관계를 말한다. 동성애는 기나긴 시대와 다양한 문화를 거치며 갖가지 형태를 띠어 왔다. 동성애의 심리적 기원은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동성애를 심각한 타락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경에 바탕을 두어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라고 천명해 왔다. 동성애는 자연법에도 어긋난다. 동성애는 성 행위를 생명 전달로부터 격리시킨다. 그 행위들은 애정과 성의 진정한 상호 보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동성의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359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정결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내적 자유를 가르치는 자제의 덕으로 때로는 사심 없는 우정의 도움을 받아서 또한 기도와 성사의 은총으로 그들은 점차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스도교적 완덕에 다가설 수 있고 또 다가서야 한다.”

이밖에 가톨릭교회 교리서 2360항은 이렇게 천명합니다.

“성은 남녀의 부부애를 위한 것이다.”

창세 19장 1-29절은 동성애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에 따른 하느님의 징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18장 22-23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겨운 것이다. 어떤 짐승하고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여자도 짐승과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추잡한 것이다.”

로마 1장 26-2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맺는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색욕을 불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탈선의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 다.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분별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짓을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1고린 6장 9-11절은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 성적 지향과 관련한 용어 정의와 법안에 따른 해설

· 성 소수자: 동성애자뿐 아니라 여성애자, 남성애자, 양성애자, 젠더

퀴어, 트랜스젠더, 간성, 제 3의 성 등을 포함한 이성애자와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사회적 소수자를 뜻한다. 이렇게 다양한 성 소수자들의 성애를 보호받고 인권의 이름으로 교육하려는 수단으로 추진하려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 성적 지향에 대한 주장: 내가 누구와, 어떤 대상이나 물건과 개별적인 성적 취향을 가져도 사람들의 평가를 받지 않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 동성애: 동성끼리 친밀함 자체를 동성애자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동성애자라는 것은 동성끼리 성적 교감과 정신을 함께 나누는 관계이다.

일각에서 동성애는 (부모의 영향이나 태중의 영향 등으로) 선천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하지만 후천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호스피스 클리닉 전문이었던 의학박사 염안섭 선생은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로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작기법으로 인간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 전체를 전수조사했는데, 사람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다고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없으며 동성애는 잘못된 문화에 젖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가톨릭교회 안에서는 보다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소명입니다.** 사제가 독신제를 지켜 육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할 때에는 하느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은 보다 완성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를 도와주는 법안이 아니라 그들을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법안이고 인간의 이기심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법안입니다.

역사는 늘 우리에게 말해 왔습니다. 성의 문란은 공멸이라고!

---

## 글을 마치며

---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성의 목적은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은 인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 그리스도교 인간학은 창세기에 드러난 인간 기원 이야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 이 말씀에는 창조의 본질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남녀 관계의 본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과 내밀한 일치를 이루게 된다. 자아와 타아는 저마다 지니는 특별한 정체성에 따라 서로를 완전하게 해 준다. 또한 자아와 타아의 만남 안에서 창조주께서 주셨으며 지켜 주시는 역동적인 상호성이 이루어진다.

32. 성경 말씀은 창조주의 지혜로우신 계획을 드러내 보여 준다. 이로써 창조주께서는 “사람에게 돌볼 책무로서 자신의 몸, 곧 남성성과

여성성을 맡기셨다. 어떤 의미로는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하여 인류와 인간 개인의 존엄, 개인들 사이의 ‘친교’에 대한 명확한 표지도 하나의 책무로서 사람에게 맡기셨다. 이러한 친교 안에서 사람은 자신을 참으로 내어 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실현한다.”<sup>1</sup> 따라서 모든 물리주의나 자연주의를 뛰어넘어,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을 바탕으로 인간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에는 “인간의 영적이고 생물학적인 경향과 함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여타의 특성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윤리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언윈(J.D. Unwin)이 『성과 문화』(Sex and Culture)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정결은 고급문화의 필수조건입니다. 언윈은 성 규범의 균형이 잡히면 그 사회의 수준은 높아지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문화가 형성되지만, 성의 자유를 누리는 사회는 하느님도 공경하지 않고 가족 간의 윤리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참된 삶의 법칙이고 기준입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부부간의 성이 아닌 그 이외의 성과 제3의 성의 일탈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세상이 된다면 인간은 하느님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하느님을 거부한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은 학교에서 비인권적이고 비윤리로 부정당할 것이 자명합니다. 교회는 비인권**

적인 조직이 되고, 인간은 더욱 깊은 절망감과 자기 소외의 나락으로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들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서와 가톨릭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침묵할까요?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우리는 예수님께서로부터 이런 비난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마르 8,33)



**천주교 광주대교구 피아골피정집**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732 Tel. 061-782-5004